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「전문직공무원 인사 규정」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원 38명(5급 38명)을 전문직 공무원 통합 정원으로 전환하고 전문직공무원 정원을 배정할 수 있는 하부조직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「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6. 11. 00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신·구정원대비표

2) 입법예고(2026. 10. 00. ~ 1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7항 중 “기후경제과장·기후에너지재정과장·기후적응과장·녹색전환정책과장·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장·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장 및 국제협력과장은 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, 기후에너지정책과장·기후에너지기술과장·수소경제기획과장·열산업혁신과장·기후에너지신산업과장·에너지안전효율과장은 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,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사무관·보건사무관·환경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”을 “기후경제과장·기후에너지재정과장·기후적응과장·녹색전환정책과장·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장 및 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장은 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, 기후에너지정책과장·기후에너지기술과장·수소경제기획과장·열산업혁신과장·기후에너지신산업과장·에너지안전효율과장은 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, 국제협력과장은 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,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장은

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· 공업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행정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, 기후에너지국제협력팀장 · 국제환경개발협력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· 공업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7항 중 “전력산업정책과장 · 전력시장과장 · 청정전력전환과장 · 전력망정책과장 · 계통운영혁신과장 · 분산에너지과장 · 재생에너지정책과장 · 태양광산업과장 · 풍력산업과장은 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, 원전산업정책과장 · 원전환경과장 · 원전지역협력과장은 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· 공업연구관”을 “전력산업정책과장 · 전력시장과장 · 청정전력전환과장 · 전력망정책과장 · 계통운영혁신과장 · 분산에너지과장 · 재생에너지정책과장 · 태양광산업과장 · 풍력산업과장 · 원전산업정책과장 · 원전환경과장 · 원전지역협력과장은 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· 공업연구관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2항 중 “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· 공업사무관 · 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· 공업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시설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”으로, “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· 공업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행정사무관 · 공업연구관 · 시설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· 공업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행정사무관 · 공업연구관 · 시설연구관 · 환경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”으

로 한다.

제48조 본문 중 “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“부이사관 또는 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”으로 한다.

제56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기후에너지정책관 : 기후에너지정책과, 기후경제과, 기후에너지재정과, 기후적응과
4. 녹색전환정책관 : 녹색전환정책과,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, 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, 기후에너지기술과,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
5. 수소열산업정책관 : 수소경제기획과, 열산업혁신과, 기후에너지신산업과, 에너지안전효율과
6. 전력산업정책관 : 전력산업정책과, 전력시장과, 청정전력전환과
7. 전력망정책관 : 전력망정책과, 계통운영혁신과, 분산에너지과
8. 재생에너지정책관 : 재생에너지정책과, 태양광산업과, 풍력산업과
9. 원전산업정책관 : 원전산업정책과, 원전환경과, 원전지역협력과
10.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
15. 전기위원회 사무국

별표 7 중 행정사무관 “34”를 “30”으로 하고, “행정사무관·환경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1”를 삭제, 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보건사무관·전산사무관·통계사무관·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“111”을 “107”로,

행정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통계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산
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사서사무관 · 기상사무관 · 사회
복지사무관 · 농업사무관 · 임업사무관 · 수의사무관 · 의료기술사무관 ·
식품위생사무관 · 의무사무관 · 약무사무관 · 간호사무관 · 항공사무관 ·
방재안전사무관 · 부감사관 · 공업연구관 · 학예연구관 · 편사연구관 · 농
업연구관 · 임업연구관 · 해양수산연구관 · 기상연구관 · 보건연구관 · 환
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“69”를 “45”로, 공업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환
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“35”를 “30”으로, 수석전문관 · 행정전문관 ·
공업전문관 · 보건전문관 · 환경전문관 또는 시설전문관 “17”을 “55”로
한다.

별표 8 중 행정사무관 “34”를 “30”으로 하고, “행정사무관 · 환경사무관
또는 통계사무관 1”를 삭제, 행정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전
산사무관 · 통계사무관 · 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“126”을 “122”로,
행정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통계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산
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사서사무관 · 기상사무관 · 사회
복지사무관 · 농업사무관 · 임업사무관 · 수의사무관 · 의료기술사무관 ·
식품위생사무관 · 의무사무관 · 약무사무관 · 간호사무관 · 항공사무관 ·
방재안전사무관 · 부감사관 · 공업연구관 · 학예연구관 · 편사연구관 · 농
업연구관 · 임업연구관 · 해양수산연구관 · 기상연구관 · 보건연구관 · 환
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“69”를 “45”로, 공업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환
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“35”를 “30”으로, 수석전문관 · 행정전문관 ·

공업전문관·보건전문관·환경전문관 또는 시설전문관 “17”을 “55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기후에너지정책실) ① ~ ⑥ (생 략)	제12조(기후에너지정책실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⑦ 기후에너지정책실에 기후에너지정책과 · 기후경제과 · 기후에너지재정과 · 기후적응과 · 녹색전환정책과 ·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 · 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 · 기후에너지기술과 ·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 · 수소경제기획과 · 열산업혁신과 · 기후에너지신산업과 · 에너지안전효율과 · 국제협력과 · 기후에너지국제협력팀 및 국제환경개발협약팀을 두며, <u>기후경제과장 · 기후에너지재정과장 · 기후적응과장 · 녹색전환정책과장 ·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장 · 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장 및 국제협력과장은 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, 기후에너지정책과장 · 기후에너지기술과장 · 수소경제기획과장 · 열산업혁신과장 · 기후에너지신산업과장 · 에너지안전효율과장은 부이사관 · 과학</u>	⑦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, <u>기후경제과장 · 기후에너지재정과장 · 기후적응과장 · 녹색전환정책과장 ·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장 및 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장은 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, 기후에너지정책과장 · 기후에너지기술과장 · 수소경제기획과장 · 열산업혁신과장 · 기후에너지신산업과장 · 에너지안전효율과장은 부이사관 · 과학</u>

기술서기관 · 서기관 또는 공업
연구관으로, 각 팀장은 과학기
술서기관 · 서기관 · 공업사무관
· 보건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시
설사무관 · 전산사무관 또는 행
정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⑧ ~ ㉓ (생 략)

제13조(에너지전환정책실) ① ~
⑥ (생 략)

⑦ 에너지전환정책실에 전력산
업정책과 · 전력시장과 · 청정전
력전환과 · 전력망정책과 · 계통
운영혁신과 · 분산에너지과 · 재
생에너지정책과 · 태양광산업과
· 풍력산업과 · 원전산업정책과
· 원전환경과 및 원전지역협력
과를 두며, 전력산업정책과장 ·

기술서기관 · 서기관 · 공업연구
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, 국제
협력과장은 부이사관 · 과학기
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, 기
후에너지환경교육팀장은 과학
기술서기관 · 서기관 · 공업사무
관 · 보건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
시설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행정
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,
기후에너지국제협력팀장 · 국제
환경개발협약팀장은 과학기술
서기관 · 서기관 · 공업사무관 ·
보건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시설
사무관 · 전산사무관 또는 행정
사무관-----.

⑧ ~ ㉓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에너지전환정책실) ① ~
⑥ (현행과 같음)

⑦ -----

-----, 전력산업정책과장 ·

전력시장과장 · 청정전력전환과
장 · 전력망정책과장 · 계통운영
혁신과장 · 분산에너지과장 · 재
생에너지정책과장 · 태양광산업
과장 · 풍력산업과장은 부이사
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
또는 공업연구관으로, 원전산업
정책과장 · 원전환경과장 · 원전
지역협력과장은 부이사관 · 과
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· 공업
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
한다.

⑧ ~ ⑩ (생 략)

제21조(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)

① (생 략)

②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기
획총괄팀 · 정보관리팀 및 감축
목표팀을 두되, 기획총괄팀장은
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· 공업
사무관 · 환경사무관 또는 시설
사무관으로, 정보관리팀장 및
감축목표팀장은 과학기술서기
관 · 서기관 · 공업사무관 · 보건
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시설사무
관 · 전산사무관 · 행정사무관 ·
공업연구관 · 시설연구관 또는

전력시장과장 · 청정전력전환과
장 · 전력망정책과장 · 계통운영
혁신과장 · 분산에너지과장 · 재
생에너지정책과장 · 태양광산업
과장 · 풍력산업과장 · 원전산업
정책과장 · 원전환경과장 · 원전
지역협력과장은 부이사관 · 과
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· 공업연
구관 -----

⑧ ~ ⑩ (현행과 같음)

제21조(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· 공업
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시설사무
관 또는 수석전문관-- , -----
----- 과학기술서기
관 · 서기관 · 공업사무관 · 보건
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시설사무
관 · 전산사무관 · 행정사무관 ·
공업연구관 · 시설연구관 · 환경

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.

③ ~ ⑤ (생략)

제48조(전기위원회 사무국장)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. 다만, 사무국장은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·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.

제56조(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) 「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7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2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-----
-----.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48조(전기위원회 사무국장) -----
-----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-----
-----,-----

-----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
-----.

제56조(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) 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기후에너지정책관 : 기후에너지정책과, 기후경제과, 기후에너지재정과, 기후적응과

4. 녹색전환정책관 : 녹색전환정책과,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, 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, 기후에너지기술과, 기후에너지환

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3. ~ 6. (생 략)</u> <u><신 설></u>	<u>경교육팀</u> <u>5. 수소열산업정책관 : 수소경제 기획과, 열산업혁신과, 기후에너지신산업과, 에너지안전효율과</u> <u>6. 전력산업정책관 : 전력산업정책과, 전력시장과, 청정전력전환과</u> <u>7. 전력망정책관 : 전력망정책과, 계통운영혁신과, 분산에너지과</u> <u>8. 재생에너지정책관 : 재생에너지정책과, 태양광산업과, 풍력산업과</u> <u>9. 원전산업정책관 : 원전산업정책과, 원전환경과, 원전지역협력과</u> <u>10.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</u> <u>11. ~ 14. (현행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)</u> <u>15. 전기위원회 사무국</u>
---	---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7]

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정원표(제53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	·	·	
·	·	·	
행정사무관	<u>34</u>	<u>30</u>	-4
·	·	·	
·	·	·	
<u>행정사무관 · 환경사무관</u>	<u>1</u>	<u><삭 제></u>	-1
<u>또는 통계사무관</u>			
·	·	·	
·	·	·	
행정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보건	<u>111</u>	<u>107</u>	-4
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통계사무			
관 · 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			

행정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통계 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시설사무 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 관 · 보건사무관 · 사서사무관 · 기상사무관 · 사회복지사무관 · 농업사무관 · 임업사무관 · 수의 사무관 · 의료기술사무관 · 식품 위생사무관 · 의무사무관 · 약무 사무관 · 간호사무관 · 항공사무 관 · 방재안전사무관 · 부감사관 · 공업연구관 · 학예연구관 · 편 사연구관 · 농업연구관 · 임업연 구관 · 해양수산연구관 · 기상연 구관 · 보건연구관 · 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· ·	<u>69</u> · ·	<u>45</u> · ·	-24
공업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환경 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· ·	<u>35</u> · ·	<u>30</u> · ·	-5

수석전문관 · 행정전문관 · 공업 전문관 · 보건전문관 · 환경 전문 관 또는 시설전문관	<u>17</u>	<u>55</u>	+38
·	·	·	
·	·	·	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8]

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정원표(제53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 · 행정사무관	· · <u>34</u>	· · <u>30</u>	-4
· · <u>행정사무관 · 환경사무관</u> <u>또는 통계사무관</u>	· · <u>1</u>	· · <u><삭 제></u>	-1
· ·	· ·	· ·	
행정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보건 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통계사무 관 · 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	<u>126</u>	<u>122</u>	-4

행정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통계 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시설사무 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 관 · 보건사무관 · 사서사무관 · 기상사무관 · 사회복지사무관 · 농업사무관 · 임업사무관 · 수의 사무관 · 의료기술사무관 · 식품 위생사무관 · 의무사무관 · 약무 사무관 · 간호사무관 · 항공사무 관 · 방재안전사무관 · 부감사관 · 공업연구관 · 학예연구관 · 편 사연구관 · 농업연구관 · 임업연 구관 · 해양수산연구관 · 기상연 구관 · 보건연구관 · 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· ·	<u>69</u> · ·	<u>45</u> · ·	-24
공업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환경 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· ·	<u>35</u> · ·	<u>30</u> · ·	-5

수석전문관 · 행정전문관 · 공업 전문관 · 보건전문관 · 환경 전문 관 또는 시설전문관	<u>17</u>	<u>55</u>	+38
·	·	·	
·	·	·	